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54
----------	------

2021년 6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1년 5월 10일
- 발 의 자: 이순열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2021년 5월 11일
- 상정일자: 2021년 6월 15일
- 의결일자: 2021년 6월 15일
 -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 의결결과: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감, 학교의 장,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
-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학습권 보장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붙임 1)
- 예산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5. 검토 의견

-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학생선수 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폭력 및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한 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동부 훈련 환경 개선,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한 안내·연수·홍보활동 강화, 교육청의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강화 등

< 최근 2년간 학생선수 폭력사건 발생 현황 및 관리 내역** >

시기	사건 내용	조치결과
2019년	지도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 아동학대의심신고 - 학폭위 개최 - 감사관 감사
2019년	학교 밖 지도자 폭력사안 발생	- 아동학대의심신고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 심리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 위센터 전문상담사 -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요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 발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함
-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기간을 두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주체는 학교의 장인 바, 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규정이 상위법령과 모순저촉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사항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13곳)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9. 5. 16.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1. 1. 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8. 1. 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0. 3.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	'16. 4. 15.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0. 2. 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1. 3. 16.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1. 3. 1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8. 11.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9. 7. 3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7. 12. 2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6. 1. 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1. 4.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1. 5. 20.

6. 토론: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제2항 본문 중 “학생운동부”를 “학교운동부”로 한다.
-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9. 소수의견: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54
----------	------------

제안연월일 : 2021. 6. 15.

제안자 : 안찬영 의원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 상 용어를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함
-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동 조례안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운동부지도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수정(안 제3조제2항)
- 조문 삭제(안 제7조제2항)
-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학생운동부지도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략)</p> <p>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u>학생 운동부지도자</u>를 채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학교운동부지도자</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교육)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u>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7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 추진 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6.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또는 훈련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제6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선수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등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9조(실태파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파악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인권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학대,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고충처리 및 선수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정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2

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운동부 지원 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또는 훈련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제6조(학생선수의 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선수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 및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지도자나 선·후배의 폭력 및 성범죄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담 등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운동부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파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파악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7조(교육) 등에 비용발생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의회 의원 이순열